

방재관련 입법, 행정예고 공고현황 방재관련 법령 등 공포, 고시현황

출처 : 소방방재청 [<http://www.nema.go.kr>]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 - 125호]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공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보험관련 단체나 기관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을 중앙본부장에게 제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중앙본부장이 내진대책에 따른 추진사항 확인 근거 마련
- 나.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관보 게재 근거 마련(안 제11조제5항 신설)
중앙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여 추진사항을 알리고자 함
- 다. 지진재해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선정(안 제11조의2 신설)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규정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③ (생략) <신설>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과 방법 및 공시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법령정보

	<p>매년 2월말까지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중앙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진보강 대책 추진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2(보험관련 단체·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나 기관은 「보험업법」제175조제2항의 협회나 같은 법 제176조제2항의 기관 등을 말한다.</p>
--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 - 126호]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절차 근거 마련(안 제3조의 2 제1항 내지 제4항 신설)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한 경우 내진보강 지원절차를 제정하여 내진보강에 대한 지원절차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내진보강 지원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내진성능 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p>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를 개설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신청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 - 97호]

1.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1.3.8 공포, 법률 제10444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인 건축물(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초고층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6조)

- 1)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인 준 초고층 건축물은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재난 및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치되고 있음
- 2) 2010년 10월 1일 발생한 부산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피난안전구역 미확보, 체계적이지 못한 초기대응, 대피안내방송 미실시, 소방장비의 한계성 등 준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상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3)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준 초고층 건축물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함으로써, 건축계획단계부터 재난

법령정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와 계획,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재난관리체제 확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함(안 제9조)

-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계획, 피난구역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등을 심의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과 소양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성 있음
- 2) 시·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3급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유지 및 안전관리, 재난 및 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박사·기술사 등 일정 기준이상의 학력과 자격을 갖춘 20~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 3)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검토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등에 대해 구체화 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협의의 대상·시기·내용 등을 구체화 함
-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으로 하며, 협의의 시기는 관리주체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허가·승인·인가·협의 또는 사전결정을 신청하거나 거주 밀도가 높아지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구축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등 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과 지진해일대비·대응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위해 관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 라이프라인 매설현황, 대테러 예방 건축설계 계획을 제출토록 함
- 3)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통해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1) 건축물의 용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상태등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 등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변경 필요
- 2) 관리주체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사용승인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작성 제출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3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은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받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수정·보완토록

-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사용승인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재난예방에 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마. 초고층 건축물등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14조)

- 1)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등 불특정 다수인과 노약자·장애인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피난을 도모하기 위해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정함
- 2)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개소 수 및 설치면적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중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층의 거주밀도가 1.5/m²인을 초과하는 해당 층에는 당해 층면적의 1/10에 해당하는 면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부분에는 당해 지하층 재실자수를 고려하여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하거나 선큰을 설치토록 함.
- 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의 피난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소방방재청 제2011-98호]

1. 제안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11.3.8, 법률 제10444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자격 및 등록기준 등을 정함(안 제3조)

-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자격 기준 등 선·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2) 총괄재난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사, 기술사, 특급방화관리자, 기사·산업기사 등으로서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 하며, 재난관리기관과 상호 긴밀한 재난관리체제유지와 총괄재난관리자 자격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선·해임한 경우 선·해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구본부장에게 신고토록 하였음. 또한 총괄재난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개설한 재난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법령정보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3) 재난의 예방과 대비·대응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총괄재난관리자' 지정하여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예방활동 기대

나. 재난 및 대테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1)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대테러 등에 대비하여 관계인·상시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2)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 및 대테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관리주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 3) 관리주체가 관계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초기대응과 피해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원활한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법·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 2) 재난 및 안전관리, 방재활동의 거점역할을 하는 종합방재실은 침수로부터 안전하고, 소방대의 접근이 용이하며 위치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토록 함. 또한 종합방재실에는 3인 이상의 상주인력을 배치토록 함
- 3) 재난발생시 원활하고 민첩한 대응 및 대처가 가능함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은 물론 재산 피해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방방재청 제2011 - 71호]

1. 제안이유

방재 시설별 설계기준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각 시설물의 성능이 통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 사용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불량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재안전대책수립을 위한 대행자 선정 시 방재분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도입하여 방재분야 전문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용어를 “방재관리대책수립 대행자”로 개정(안 제2조제13호)
- 1) 현행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는 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 즉, “방재관리”에 관한 대책수립 업무 대행자이므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 2) 방재관리대책수립의 업무 활동범위를 계획·조사·설계·감리·점검·평가·자문 및 지도 등으로 구체화 함.
- 나.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5호)
- 다. 소방방재청장이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제1항)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운영하도록 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제2항 및 제3항)
- 마.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을 평가하고 통합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3)
-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결과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하는 규정 신설(안 제19조 제5항)
- 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공공 토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9조 제6항 및 제7항)
- 아.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대행자 실태 점검을 위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안 제44조의2)
- 자.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대행자의 업무실적과 기술인력의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안 제44조의3)
- 차. 방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안 44조의 4)
- 카. 방재분야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65조의2)
- 타. 재난지원금을 신용불량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 등에게 지급하거나 신용불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제71조제1항 및 제2항)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소방방재청 제2011 - 113호]

1.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에 대한 업무절차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지침을 직접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법령정보

2. 주요내용

-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시 업무흐름에 따라 목차 재정리
- 나. 지구 지정 절차중 '관계전문가 검토' 단계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재정리(안 제2장 제2절)
- 다. 지구지정결과 보고서 지정도면을 포함하여 보고(안 제3장 제5절)
-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지침에 누락됨에 따라 조항 보완(안 제3장 제8절)
- 마. 사전 설계검토회의는 방재관리국장 주관에서 재해경감과장 주관으로 변경(안 제6장 제4절)

• 목 차

당 초	변 경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제2장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제1절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절차 - 관계전문가 검토 내용 기술 제2절 지구지정 고시방법 제3절 지구지정에 따른 보고	제1절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개요 ○ 지정목적, 지정권자, 지정절차 제2절 지정대상 여부 검토 제3절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 ○ 자연재해위험지구 유형별 지정기준 ○ 자연재해위험지구 등급분류 기준 제4절 관계 전문가 검토 제5절 지구지정 고시방법 제6절 지구지정에 따른 보고
제3장 유형 및 지정기준 제1절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유형 제2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 제3절 자연재해위험지구 등급분류 기준	제3장 정비계획 수립
제4장 정비계획 수립	제4장 타당성 평가
제5장 타당성 평가	제5장 사업계획 수립
제6장 사업계획 수립	제6장 정비사업 관리
	제1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시행 제2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관리 제3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 관리 제4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전설계 검토
제7장 정비사업 관리	제7장 지정해제 및 관리
제1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시행 제2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관리 제3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 관리 제4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전설계 검토	
제8장 지정해제 및 관리	제8장 비용편익 분석
제9장 비용편익 분석	

• 개정내용

당 초	개 정 (안)
<p>제2장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제1절 목적, 지정절차, 지정권자, 관계전문가 검토내용을 함께 명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제2장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제1절 목적, 지정권자, 지정절차 명기</p> <p>제2절 지정대상 사전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구지정의 적정성 ·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문가가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현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계전문가를 구성하는 때에는 방재분야전문가 5~10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계 전문가가 해당 지역의 여건,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위험 예정지구 현황, 과거피해현황, 예정지구 지형도 및 현황사진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별지서식 1-1>에 따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관계전문가는 회의 참석 후 지구지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별지서식1-2>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전문가 검토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방재분야전문가 5~10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활용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지구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고시 내용을 시 ·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신설)</p> <p>제3절 지구지정에 따른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지구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고시 내용을 시 ·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제4절 지구지정에 따른 결과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지구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고시 내용을 시 ·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결과를 보고하는 때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p>(신설)</p> <p>제4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수립 제1절~7절(생략) 제8절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정비계획수립 결과를 시 ·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제3장 정비계획 수립 제1절~7절(좌동) 제8절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정비계획수립 결과를 시 ·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한 경우도 이와 같다.
<p>제7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리 제1절~3절(생략) 제4절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회의는 방재관리국장 주관으로 진행하며, 검토위원은 재해경감대책협의회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회의 위원 등 관계전문가 20~25인을 검토위원으로 사전 위촉 또는 임명하고, 매회 3~7인 이하로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p>제6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리 제1절~3절(좌동) 제4절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회의는 재해경감과장 주관으로 진행하며, 검토위원은 재해경감대책협의회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회의 위원 등 관계전문가 20~25인을 검토위원으로 사전 위촉 또는 임명하고, 매회 3~7인 이하로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방재정보광장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시행 2011.11.12]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5호, 2011.8.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운용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함

제4조제2항「손해평가요령」에서 “손해평가자격 인증” 발급규정 삭제

- 손해평가인 교육이수자의 ‘손해평가자격 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2항)으로 일원화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1.9.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6호, 2011.9.1, 일부개정]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10-2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41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6호, 산림청고시 제2010-26호, 2010.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2011. 9. 1)

제3조제1항제3호 중 “어선, 수산생물, 어망·어구, 수산 증·양식시설(이하 “수산분야”라 한다) : 50%”를 “어선, 수산생물, 어망·어구, 수산 증·양식시설(이하 “수산분야”라 한다) : 100%”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신고되어 확인된 재난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부터 적용한다.
- ③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까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재해구호법

[시행 2011.11. 5] [법률 제11038호, 2011. 8. 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

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의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탁자의 의뢰를 받아 접수한 의연금품을 모집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의연금품 모집 및 접수의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7항 중 “지급기준은”을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진재해대책법

[시행 2011.12. 1] [법률 제10754호, 2011. 5.3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책정보

제14조제1항제21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중앙본부장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속히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하천정비법

[시행 2011. 8.31] [법률 제10752호, 2011. 5.3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관리청이 허가 처리기간 내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절차에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1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11.13] [대통령령 제22923호, 2011. 5.1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손해평가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규정함으로써 손해평가인증의 대국민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방재청장이 발급한 손해평가인증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